

제주지방법원 2022. 8. 26 선고 2021가합1311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건양

담당변호사 최건

피 고 1. A

2. B

3. C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건호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정재훈, 박성현

4. D

변 론 종 결 2022. 7. 15.

판 결 선 고 2022. 8. 26.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식회사 E가 피고 A, 피고 B, 피고 C, 피고 D에 대하여 각 2017. 6. 27. 행한 유상감자를 각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A은 600,000,000원, 피고 B은 450,000,000원, 피고 C은 225,010,000원, 피고 D은 224,99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구 지방공기업법(1999. 1. 29. 법률 제5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 조례에 따라 청정 지하수의 난개발 방지 및 주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 등을 목적으로 1995. 1.경 제주특별자치도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1998년경부터 먹는샘물 제품을 출시, 판매하여 왔다.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플라스틱 필름의 제조 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0. 5.경 설립된 중소기업이다.

나. E는 2017. 3.경 F단체에 'G'(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등의 공공기관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에 자금을 대출해 주는 금융서비스)을 신청하였고, 2017. 3. 15. 원고에게 계약금액 4,889,358,150원 상당의 H 및 I 생수병에 부착할 수축필름을 공급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계약'이라 한다)을 원고와 체결하였다.

다. F단체는 2017. 3. 14. 원고에게 'E G 신청건에 대한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하에 '이 사건 물품계약에 대한 대금 결제계좌를 업체 명의의 계좌로 고정요청하니 계좌고정 수락에 대한 회신문서를 처리해 달라. 또한 업체의 계좌변경요청이 있을 경우 은행담당자와 사전 협의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라. 원고의 담당자는 2017. 3. 15. F단체에 'E의 G 대출과 관련하여 원활한 대출 상환을 위해 이 사건 물품계약과 관련된 향후 지급될 선금을 포함한 모든 대금 지급을 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이하 '이 사건 결제계좌'라 한다)로 지급할 것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마. 중소기업은행은 2016. 5. 11. E와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E에 이 사건 물품계약을 근거로 2017. 3. 15.부터 2017. 6. 14.까지 합계 3,911,000,000원을 대출하여 주었다.

바. 원고는 이 사건 물품계약에 대한 대금으로 2017. 6. 12. 420,334,569원, 2017. 6. 14. 1,170,000,000원, 2017. 8. 14. 24,770,124원, 2017. 9. 15. 25,457,004원을 이 사건 결제계좌로 송금하였다.

사. 그런데 E는 2017. 9. 12.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계약에 대한 대금을 E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2생략) 계좌로 입금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그 요청에 따라 위 계좌로 2017. 9. 13. 1,331,136,972원, 2017. 12. 11. 98,900,790원, 2017. 12. 29. 242,763,264원, 2018. 1. 12. 126,138,384원 합계 1,798,939,410원의 물품대금을 입금하였다.

아. 중소기업은행은 ‘원고는 결제계좌를 변경하지 않기로 한 약정상 의무를 위반하여, 2017. 9. 13.부터 2018. 1. 12.까지 합계 1,798,939,410원을 E의 타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중소기업은행에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63498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중소기업은행의 채무불이행 주장을 받아들여 2019. 7. 24.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에 1,798,939,4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행청구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항소, 상고를 거쳐 2021. 5. 21. 확정되었다.

자. 원고는 위 판결이 항소심 재판 계속중에 있던 2019. 8. 29. 피공탁자를 중소기업은행으로 하여 제1심판결에서 인용된 청구금액 및 지연손해금 합계 1,943,204,114원을 공탁하였다. 이후 원고는 ‘E의 대표이사 A의 불법행위로 원고가 1,943,204,114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E와 피고 A을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21가합10032호로 민법 제750조 또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21. 4. 23. 무변론에 의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21. 5. 14. 확정되었다.

차. 한편 E는 2017. 6. 27. 보통주식 327,350주를 177,350주로, 자본의 총액을 3,273,500,000원에서 1,773,500,000원으로 감소시키는 자본감소 등기를 마쳤고(이하 ‘이 사건

자본감소'라 한다), 2017. 7. 7. 주주 A에게 600,000,000원, 주주 B에게 450,000,000원, 2017. 7. 10. 주주 C에게 225,010,000원, 2017. 7. 11. 주주 D에게 224,99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카.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1) 원고의 피보전채권

원고가 이 사건 결제계좌로 송금하는 물품대금이 중소기업은행의 대출금 채권에 대한 담보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원고는 대출채무자 E의 물상보증인과 유사한 지위에 있고, 원고가 E에 대하여 가지는 1,943,204,11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청구권은 구상권이라고 보아야 한다. 2017. 3.경 E가 F단체에 G 대출서비스를 신청하고, 원고와 이 사건 물품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의 위 구상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곧 원고의 구상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도 있었으며 실제로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E는 2017. 6. 27. 이 사건 자본감소를 행하여 주주들인 A, B, C, D에게 각각 600,000,000원, 450,000,000원, 225,010,000원, 224,990,000원을 환급하였는바 이는 회사의 일반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아울러 이 사건 자본감소 당시 피고 A은 피고의 대표이사, 피고 B은 피고의 상무이사, 피고 C은 피고의 감사, 피고 D은 피고의 사내이사로서 피고의 사해의사를 잘 알고 있었다.

3) 따라서 이 사건 자본감소 행위는 취소되어야 하고,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피고 A은 600,000,000원, 피고 B은 450,000,000원, 피고 C은 225,010,000원, 피고 D은 224,99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인정근거] ○ 피고 A, C, D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10 내지 12호증, 제14호증, 제16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J : 다툼 없는 사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취소의 대상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에 국한되는바, 원고는 이

사건 자본감소가 채무자인 E와 수익자인 피고들 사이에서 행해진 법률행위라는 전제하에 그 취소를 구한다.

그러나 주식회사의 자본감소는 상법 제438조 제1항, 제434조, 제439조 제2항 본문, 제232조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 및 채권자 이의절차를 거치거나 결손금 보전을 위한 자본감소의 경우 상법 제438조 제2항, 제368조 제1항에 따라 주주총회 보통결의를 거쳐 주식의 병합 등 실행절차가 완료된 때(상법 제441조)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 상법상의 행위일 뿐, 주식회사와 주주들 사이에 행해진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고,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자본감소의 결의도 하나의 절차적 요소에 불과하다.

유상감자가 이루어지면 사실상 기존 주주로서는 출자를 환급받게 되고, 이 경우 주주가 회사채권자보다 우선하여 투하자본을 회수하는 것이 될 수 있으나 이러한 감자환급금의 지급 역시 유상감자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절차에 불과할 뿐이고 이를 가리켜 ‘자본감소’라고 할 수도 없다.

나. 또한, 상법 제445조는 ‘자본감소의 무효는 주주·이사·감사·청산인·파산관재인 또는 자본감소를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한하여 자본감소로 인한 변경등기가 있는 날로부터 6월 내에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자본감소에 수반되는 복잡한 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무효 사유를 출소기간의 경과 후에도 주장할 수 있도록 하면 법률관계가 불안정하게 되어 위 규정의 취지가 몰각된다는 점에 비추어 위 규정은 무효 사유의 주장 시기도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다1201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자본감소로 인해 주주가 사실상 회사채권자보다 우선하여 투하자본을 회수하는 것이 되어 회사채권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된다 하더라도 회사채권자로서는 자본감소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상법 제445조에 의한 자본감소 무효의 소에 의해서만 다룰 수 있고, 자본감소에 수반되는 법률관계의 획일적 확정을 위해서라도 회사채권자가 상법상의 소가 아닌 민법상의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자본감소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전제로 위 자본감소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문종철, 판사 최석준, 판사 강미혜